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국회 제출규정 신설〉
■ 박대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324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 지급금추계서의 국회 제출규정 신설 (안 제9조의2제4호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대출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11. 6.

다. 회 부 일 : 2024. 11.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 임대형 민자 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등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 정부가 향후 10년 이상의 기간에 민간사업자에게 임차료 등으로 지급할 예산 규모를 전망하여 연도별로 추계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함. 현행법은 이와 연계하여 그 추계서를 매년 회계연도 개시일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추진되는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도 사회기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과 마찬가지로, 총한도액 등에 대해 국회의 의결을 받고 그에 따른 정부지급금 규모를 매년 추계·작성하도록 하는 조항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신설하였으므로 현행법에서 해당 추계서의 국회 제출조항을 병행하여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재정 관련 서류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4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국회 제출규정 신설 (안 제9조의2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 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 기재부장관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1. 제92조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u><신 설></u>	○ 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의3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개정안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재정 관련 자료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제9조의2는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추계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정보들은 국가채무와는 별개로 국가재정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재정 통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러한 재정 관련 자료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는 국회가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국가재정 부담규모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부가 향후 1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임대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주무부처별·대상시설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료임.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¹⁾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 및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등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①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이라 한다)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이하 “총한도액등”이라 한다)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한도액은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 한도액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총한도액 변경) ①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 총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100분의 20 이내에서 변경(예비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이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의4(한도액 증액 등의 동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대상시설을 추가하려면 미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로 주무부처별·대상시설별 등으로 전망한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이하 이 조에서 “정부지급금추계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정부지급금 규모의 증감 원인 등을 분석하고 이를 추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임대형 민자사업에 따라 지불되는 임대료가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상환하여야 할 부채로 재정지출의 경직성을 초래하기에 이에 대한 국회의 사전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임.²⁾

한편, 「소프트웨어 진흥법」³⁾에서도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은 민간이 시스템 구축비를 투자한 후 계약기간동안 운영권을 획득하고, 공공은 시스템 운영·유지관리비를 분담하고 민간의 기투자금을 임대료 형태로 분할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임대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 구조]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참고로 국회가 의결한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은 16,431억 원임.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하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의 개발 후 일정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수익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프트웨어의 개발 후 일정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익을 얻는 방식
3.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상 임대형 민자사업과 실질적인 구조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음. 양자는 민간이 목적물(사회기반시설/소프트웨어)을 준공(개발)한다는 점, 이를 발주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임대하여 임대료(사용료)를 지급받음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한다는 점에서 유사함.

이에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역시 임대형 민자사업과 같이 한도액에 대한 국회 제출 및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⁴⁾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개정되었음. 이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받아야 하며,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함.⁵⁾

4)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

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의2(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①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하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한다)의 총한도액, 대상사업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이하 “총한도액등”이라 한다)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총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총한도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대상사업을 추가하려면 미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예비한도액 금액, 총한도액등 국회 제출 및 총한도액 변경에 관하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제2항·제3항 및 제7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3(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① 정부는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로 주무부처별·대상사업별 등으로 전망한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이하 이 조에서 “정부지급금추계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정부지급금 규모의 증감 원인 등을 분석하고 이를 추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가 「국가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매년 회계연도 개시일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의3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도 재정 관련 서류로 매년 회계연도 개시일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과 실질적인 구조가 동일하다는 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 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체계정합성 및 투명성 차원에서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도 재정 관련 서류로서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것이 「국가재정법」 제9조의2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⁶⁾

참고로 최근 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⁷⁾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보고에서도 현행 「사회기반시

6) 참고로,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정부지급금추계서는 중장기적인 재정소요를 포함하고 있어 개별법이 아닌 「국가재정법」에 근거를 두는 것이 타당하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7)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9311호)」이 발의되어 2023. 12. 20. 본회의 통과되었으며,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

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가 「국가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또한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기획재정부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 ----- -----.
1. 제92조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1. ~ 3. (현행과 같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신설>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의3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문 의 처

02)6788-5157